

제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2. 2. 16.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2월 16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고 승 범 위 원 장

(의결 제19~30호, 제32~44호, 보고 제11~13호)

도 규 상 부위원장

박 정 훈 위 원

김 용 재 위 원

김 태 현 위 원

이 승 현 위 원

김 용 진 위 원

이 찬 우 대리참석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2년도 제2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2차, 제3차 임시 및 제3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 2022년도 제2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2차, 제3차 임시 및 제3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는 既송부한 자료로 같음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관 일부 변경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22년 2월18일 시행 예정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관 변경안을 인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0호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TM모집시 모바일, 음성봇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 단위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의 종료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호 『공인회계사 ○○○ 등 2인에 대한 징계의결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직무정지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호 『피엔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4호 『주식회사 다운자산관리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5호 『주식회사 만사무사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6호 『주식회사 블랙큐브 자산관리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7호 『주식회사 재네트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8호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피엔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등 6개 대부업자가 총자산한도를 위반하여 영업 전부정지(1개사 6월, 5개사 3월)를 처분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호 『(주)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주)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3월, 대표이사 직무정지 3월의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위원)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특히 ○상임위원께서 관련 법에 대해 정리를 해주셔서 깔끔하게 이해가 되었음.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인가를 줄 때 위험관리기준에 관련된

것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가 최근에 자산운용사들 대표 몇 사람과 위험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 대부분이 지금 현재 수준 정도라고 함.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같이 고민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음.

- (위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음. 이런 부분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보고자) 이번 제재가 나가고 나면 운용사들도 위험관리기준 마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조금 더 보완할 것으로 예상 이 됨. 감독당국 전체적인 차원에서 운용사들이 펀드 특성에 맞는 위험관리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0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중소기업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임직원 제재의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호 안건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증권선물위원회 수

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음. 증권선물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검사 실시 과정에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관련 지적사항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된 금감원 질문서 및 중소기업은행 자체점검 결과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핀 결과, '위반'으로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위반건수에서 제외하고, 위반정황을 고려할 때 동기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위반동기를 '상'에서 '하'로 감경하였음. 한편, 투자광고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자 요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경위서를 제출한 2건은 직원이 해당 문자를 '투자광고'가 아닌 단순한 안내문자로 오인한 규정 미숙지로부터 비롯된 과실로 보아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중과실)'으로 감경하였음.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수정심의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47.1억 원으로 수정의결하겠음. 그 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업무일부정지 1월 조치 등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주)디스커버리자산운용 1회, 중소기업은행 4회 논의하셨고 또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도 (주)디스커버리자산운용 5회, 중소기업은행 6회로 논의를 엄청 많이 하셨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금융위·금감원에도 내용에 대해서 참고자료나 이런 것으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람. 다들 수고하셨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호 『한국예탁결제원 및 교보증권 외 23개 증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22년도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비스로,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는 등 금융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3호 『한화투자증권(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4호 『케이비증권(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5호 『(주)씨비파이낸셜솔루션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6호 『삼성생명(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7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8호 『신한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9호 『(주)KB국민카드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40호 『네이버파이낸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41호 『자이랜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42호 『(주)빅밸류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43호 『(주)4차혁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44호 『신한금융투자(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

규제샌드박스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22년도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비스로,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는 등 금융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내용

- (위원) 실지명의확인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안 바뀌는 것인지 모르겠음. 법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 이것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속도를 내서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음. 저는 사실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Negative 방식으로 바꾸자는 입장임. 우리가 꼭 무슨 매체를 쓰라고 지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대신 사고 나면 책임을 져라.” 하는 것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계속 다양한 수단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계속 이 특례로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의 경우에는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었는데 사실 개인 간 거래가 시장에 굉장히 많음.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가 잘못된 것임. 비즈니스모델이 안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혁신지원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규제특례만 해 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할 것인지, 이 건도 사실은 제가 혁신위원회 할 때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임. 이런 경우에 아직 서비스 출시가 안 된 것들은 연장을 해 주고, 저는 사실 지금 상태로는 연장을 안 해 주어도 된다고 생각을 함. 여기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님. 단지,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혁신으로 인정을 했던 아이디어들이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뭔가 좀 더 밀도 있게 논의를 해서 비즈니스모델을 수정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수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

- (보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음. 먼저 규제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음. 현재 185개 정도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된 상태임. 그런데 규제개선 전체 상황을 보면, 185건 중에 40건 정도는 규제가 이미 개선이 되었으며 40건 정도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규제개선이 상당히 진행 중임. 나머지 100개 중에 50개 정도는 현재 구체적인 규제개선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50개는 운영성과 등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규제개선 여부를 파악해야 될 사항임.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행 3년차에 접어들고 있음. 앞으로는 규제개선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그다음에 ◆◆◆◆◆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아무래도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 개인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인정을 해 주는 서비스임. 이런 서비스가 중고차거래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 간 월세지급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서비스인데 이것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음. 그런 면을 감안해 보면 이 서비스 자체의 비즈니스모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음. 비즈니스모델의 한계로 인해 서비스가 출시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2019년과 2020년에 지정된 것 중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것이 30건 정도가 있음. 그 30건에 대해서 출시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서, 핀테크기업의 경우에는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출시되지 않고 있는 이유 등을 파악하게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음.

○ (위원) 앞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건이 올라올 때 규제개선 부분도 같이 보고가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임.

○ (보고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계획도 같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위원)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음. 저도 같은 생각이 들어 실명법을 담당하는 은행과 과장과 실무진들에게 물어보니 '1993년에 금융실명법 시행되고 나서 실지명의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핵심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해보고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였음. 저도 그것을 빨리 하자고 했음. 규제개선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실지명의 확인 관련 혁신금융서비스가 자꾸 신청되고 있고, 앞으로 다른 방법이 더 나와서 계속 신청될 수도 있는 데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음.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지정대로 하고 제도개선은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모아서 따로 또 할 것이 아니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면서 제도개선·규제개선을 어떻게 할지 같이 논의를 해야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음.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11호 『'2021.4월~2021.9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12호 『보험업 허가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13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금융위원회 제3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54분 폐회)